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7025호 2026년 4월 20일(월)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66호) 7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67호)	12
○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68호)	14
○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69호)	18
○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0호)	20
○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1호)	24
○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2호)	25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3호)	27
○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4호)	29
○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5호)	32
○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6호)	36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7호)	39
○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8호)	45
○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79호)	51

○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0호)	57
○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1호)	61
○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2호)	64
○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3호)	67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4호)	70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5호)	72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6호)	73
○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7호)	85
○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488호)	87

■ 고 시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149호)	90
○ 소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26-150호)	91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151호)	93
○ 벼락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152호)	96

■ 공 고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826호) 99
- 기본측량 실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828호) 100
-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830호) 101
-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837호) 104

시 군

■ 고 시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류 검단8호선)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6-68호) 108
-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하117호선,소로2-하119호선,중로3-하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6-65호) 111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6-54호) 115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6-55호) 129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6-56호) 131
-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울진군 고시 제2026-84호) 135

■ 공 고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녹지,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6-1316호) 138
- 칠곡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칠곡군 공고 제2026-539호) 157

기 타

■ 공 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성소방서 공고 제2026-1호) 160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163



경 상 북 도

조 례

경상북도 조례 제5466호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의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직원 보호 등) ① 지방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 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중 출장의 필요성의 기준 4와 출장자의 적합성의 기준 4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한 차례 연임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 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가?		
지방의정과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가?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 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경상북도 조례 제5467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전통 소싸움에 대한 세액 경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소싸움경기 투표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8항”을 “법 제78조제6항”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을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을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68호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말한다.
3.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말한다.
4. “영유아”는 장애의 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영유아를 말한다.
5. “지원센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포함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의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및 복지지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기구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4.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5.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6.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7.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8.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 2. 장애아동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동향 분석
 - 3. 장애아동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교육
 - 4.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업
 -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계·협력 체계)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1. 시군
- 2. 경상북도교육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5. 그 밖에 도지사가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69호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노후 되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 및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 새마을 창고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노후 새마을창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70호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황 명 석 인
행 정 부 지 사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조제2항 후단 중 “우선적으로 고려”를 “중요시”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공공부문”을 “공공과 민간의”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6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
2. 장애인 고용 사업주
3.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취업지원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일자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적응훈련 지원
3. 장애인 고용 가능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5. 그 밖에 장애인 취업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고용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초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우수기업”을 “우수사업주에 대한”으로 한다.

10.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홍보 및 확산 사업
11.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 컨설팅 지원 사업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 용”을 “고용”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센티브) 도지사는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게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센티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설치·운영 또는 지정”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 또는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5.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73호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황 명 석 인
행 정 부 지 사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초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 중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초 다자녀 가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74호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교육 진흥의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6.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국가유산교육 현장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2. 국가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국가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75호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폐현수막”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및 원단류에 속하는 현수막을 말한다.

3.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기술, 바이오 기술,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나. 경상북도의회

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방향
2.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3. 폐현수막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4. 폐현수막의 재활용 현황
5.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른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친환경 현수막 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지원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76호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황명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
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산양삼 산업”이란 산양삼 및 산양삼제품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3.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산양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양삼 재배·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수출 판로 지원
4. 산양삼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하는 임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77호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황 명 석 인
행 정 부 지 사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연 6퍼센트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2.5/100”을 “1.0/10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5/100”을 “1.0/100”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를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하천수 사용료	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m ³) 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m ³) 라. 그 밖의 용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구 분	산 정 기 준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p>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p> <p>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공회의소 및 한국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로 한다.</p> <p>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p>
7.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p>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p>
8.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매점포함)	<p>토지가격의 5/100</p>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p>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p>

※ 비 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5.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6.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경상북도 조례 제5478호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황명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급망 위협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망 위협”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망 위협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자재”란 농업에 사용되는 소모성 투입재를 말한다.
4. “필수농자재”란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주요 농자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

5. “농업용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다음 각 목의 에너지를 말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른 농사용 전기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 에너지(이하 “필수농자재등”이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필수농자재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에서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주요 농작물·임산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임산물생산업 품목을 말한다) 재배지 또는 주요 가축사육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경영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8조(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수입가격 및 수입물량, 필수농자재 제품별 판매가격과 판매가격 산정근거 및 판매물량,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별 재고물량, 농업경영체별 필수농자재등 구입가격 및 구입물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기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제10조(자금 지원)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이용에 대한 융자·보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자금의 용자·보조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설비 투자자금의 용자·보조

제11조(조세의 감면) 도지사는 공급망 위협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필수농자재등 지원 상황 점검)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원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환수)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제5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79호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의 공동 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가공식품”이란 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거나 분쇄, 절단 등을 통해 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이를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3.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부착·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의무)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현황과 실태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관련 기본현황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3.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대상 품목 선정
2. 참여 수산인 및 기업과 생산자단체 선정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신규 승인 및 취소
4.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사업 위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장
2. 도 및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기관(단체) 소속 공무원
3.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신규 개발 및 개선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품의 육성과 관리
3.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

4.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신규 개발 및 변경)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어가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 신청에 대해 품질 및 포장재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용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완 및 시정요청 등) 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13조제2항의 기준에 부적격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그 보완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및 시정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수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이 제13조제2항의 기준에 부적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80호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황 명 석 인
행 정 부 지 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고 질병·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축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축 사육, 환경 관리, 질병 예방 및 축산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축산업을 말한다.

3. “축산 데이터”란 가축 생육·행동·생산 정보, 축사 환경 정보, 사양·질병 관리 정보 및 축산 경영 관련 자료를 말한다.
4. “축산플랫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스마트 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축산농가의 단계적·자발적 스마트 전환 유도
2. 도내 축산농가의 기술 접근성 제고
3. 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을 고려한 기술 활용 및 확대
4.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현장 환류의 강화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및 축산농가의 스마트 축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축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도내 축산업 여건과 기술 도입 수준 분석

3. 축산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 축산 기반시설 및 기자재 보급 계획

5. 인력 양성 및 교육·컨설팅 방안

6.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기술 도입 현황, 생산성 변화, 경영 개선 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 및 확산 사업

2. 스마트 축산 기자재 보급 및 현장 적용 지원

3. 축산 데이터 활용 경영 개선 지원

4. 스마트 축산 교육·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5.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산 시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축산플랫폼 구축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플랫폼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축산플랫폼은 정책 지원, 현장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③ 축산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발굴, 성과 공유 및 정보 제공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전담 인력 및 조직)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축산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81호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어촌의 특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어촌공동체의 자생적·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특화”란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업·유통·관광 등 관련 산업을 융합·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3.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어촌지역에서 시행되는 어촌특화사업과 이에 참여하는 어업인, 어촌주민, 어촌공동체, 법인 및 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어촌특화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어촌 현황 및 여건 분석
3.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 방안
4. 어촌특화사업 및 융복합산업화 추진 방안
5. 어촌 관광·정주여건·공동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어촌특화발전위원회) 도지사는 어촌특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촌특화사업의 선정·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 지원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어촌특화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
2.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3.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4. 어촌특화자원 기반 산업 육성 및 융복합산업화
5.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6. 어촌특화상품 개발,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7. 어촌관광자원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어촌계,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군, 관련 기관·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어촌특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82호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황 명 석 인
행 정 부 지 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염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염소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생산,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관련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경상북도에서 염소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염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염소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염소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5.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염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염소 생산·사육시설의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염소 도축·가공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지원사업
3. 염소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도 사업
4. 염소 우량종축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5. 염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6. 염소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83호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황명석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통합·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4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시기와 동의 내용
-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에 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 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84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 정 부 지 사 황 명 석 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흙막이 계측관리의 스마트 계측 적용)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의 위험 발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은 다음을 말한다.

1. 흙막이 계측관리: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시 발생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로서 붕괴·침하 등 위험을 조기에 인지

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

2. 스마트 계측: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 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85호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황명석 인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축사 시설(우사, 돈사 및 계사 시설등을 말한다) 밀집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86호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황 명 석 인
행 정 부 지 사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행위는 별표 1과”를 “위반행위는 별표와”로 한다.

제3조의 제목“(신고방법 및 포상금품 지급대상)”을“(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금품”을 “포상금”으로, “경상북도내”를 “경상북도 내”로,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불법행위 신고·접수”를 “위반행위 신고·접수”로, “위법여부”를 “위반여부”로, “별지제3호 서식의 불법행위”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행위”로 한다.

제6조의 제목“(신고포상금품 지급)”을“(신고포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를 “제3조의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품”이라 한다)”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포상금품”을 “신고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불법을”을 “위반행위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신고포상금품”을 “신고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7.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은 5만원의 포상금(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월간 및 연간 한도는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불법행위에”를 “위반행위에”로,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고, 신고포상금품이 지급된 후 같은 장소에서 불법행위의 신고시에도 신규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반행위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신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신고포상금품의 지급방법)”을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포상금품”을 “신고포상금”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간 및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조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 속하는 달 및 연도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한다.

1. 이 조례의 시행일 속하는 달의 월간 포상금 지급한도: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
2. 2026년도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 2026년 1월 1일

②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분에 대한 월간 및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포상 위반행위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 고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대상건물	대 상 명			
	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p>위와 같이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 신고포상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 소방서장 귀하</p>				
<p>※ 붙임자료</p> <p>○ 사진, 영상 자료 또는 기타 증빙자료 등</p>				

<별지 제2호서식>

신고포상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자		신고(위반)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금액		비고 (담당자)
			성명	주소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일자	지급일자	입금계좌	
					○ 대상명(상호명) 및 주소 ○ 위반내용	'00.00.00.		'00.00.00.	만원	'00.00.00. ○○은행 000-000-0000	

비고: ① 신고방법은 정보통신망(경상북도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자우편,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누리집), 일반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② 연번은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신고포상 위반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접수번호: 2025-00〉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 인 및 처 리 사 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 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 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접수일자		
	신고요지	○대상명(업소명): ○주소: ○내용: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신고포상금 지 급 기 준			

3. 포상결정내용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 내용	위반행위 일시	신고일시
	신고대상	
	위반행위의 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	확인일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 법규	
	행정처분 등	
	처리일 및 처리결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반행위(제2조제2항 관련)

1.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

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 2) 문화 및 집회시설
 -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
 - 4) 운수시설
 - 5) 의료시설
 - 6) 노유자시설
 - 7) 운동시설
 -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9) 숙박시설
 - 10) 위락시설
 - 11) 공장
 - 12) 창고시설
 - 12) 관광휴게시설
 - 13)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신고 대상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 1)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가) 수신반 전원
 - 나) 동력(감시)제어반
 - 다)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
- 3)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4)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나.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다.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5)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경상북도 조례 제5487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황명석 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의 “재적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지정위원”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공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 사업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3. 저출생,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4. 고령화 및 무장애 환경 대응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488호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황명석 인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이용시설

4. 주민복지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③ 도지사는 빈집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업비 보조) 법 제44조에 따라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빈집의 안전조치 비용
4. 빈집실태조사 비용,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빈집정비사업 비용
5.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빈집정비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149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20.

경 상 북 도 지 사

연번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1	지방하천 (한천)	교 량 신 설	〈보도교〉 L=94m, B=3.0m (영구 423㎡) (일시 2,722㎡)	구미시 양호동 607-4번지 외 5필지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 시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6-150호

소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안)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소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2. 사업내용 및 구역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소암리, 이안리 일원
- 수혜면적 : 52.6ha
- 사업계획개요
 - 배 수 장 : 1개소 $Q=5.0\text{m}^3/\text{s}$ ($\varnothing 1000\text{mm}\times 120\text{kW}\times 2\text{대}$, $\varnothing 700\text{mm}\times 65\text{kW}\times 1\text{대}$)
 - 배 수 문 : 1개소 확장·재설치($3.0\text{m}\times 2.0\text{m}\times 2\text{련}$)
 - 배 수 로 : 1조 411m($2.0\text{m}\times 1.2\text{m}$)
 - 매 립 : 3.76ha ($2,907\text{m}^2$)

3. 사업비소요액 : (당초) 5,173백만원

(변경) 5,198백만원

4. 사업 예정기간 : (당초) 2024. 7. ~ 2027. 12.

(변경) 2024. 7. ~ 2026. 12.

5. 사업의 효과

- 편익비용비율(B/C) : 1.05%(4.5%~3.5%할인시)
- 내부투자수익율(I.R.R) : 4.8%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7. 기 타 : 관련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054-531-363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6-15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청송군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청송군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청송군청

(대표 : 청송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권영문)

나. 주 소 :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25번지 일원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비 고
통합공공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488㎡ ○ 연 면 적 : 6,108.4643㎡ ○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지하1층/지상12층, 110세대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8.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송군 농촌활력과(054-870-64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신규	25	전	3,540	3,539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			
2	신규	550-62	대	232	132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			
3	신규	550-81	대	65	15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			
4	신규	550-87	전	241	119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			
5	신규	550-63	대	306	159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			
6	신규	550-1	전	985	267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			
7	신규	26-4	대	257	257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			
			계	5,626	4,488					

경상북도 고시 제2026-152호

벼락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벼락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저수지 준설로 저수량 증대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에 따른 민원해소 및 식량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사 업 내 용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벼락	의성	단북	정안	36.9	준설 1,884m ³	50	2026.04. ~ 2026.12.31.	

3.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30-8142)

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826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주)주오엔지니어링 (김교재)	일반측량 (430-87-02966)	04-00594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1길 24, 202호	2026.04.16.

경상북도 공고 제2026-828호

기본측량 실시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2026년 국가기본도(5K·1K) 수정 사업』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측량의 종류 : 기본측량
2. 측량의 목적 :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국가기본도 갱신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6. 3월 ~ 2026. 12월
4. 측량의 실시지역 : 경상북도 일원
5. 기타사항 : 관련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17)로 문의바람

경상북도 공고 제2026-830호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목 :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054-420-8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사방사업토지사용통지공시송달내역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적공부			사방사업실행		토지사용내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사업명	면적(㎡)	사용기간	사용자재	주소	성명	
1	김천	남	오봉	산204	임야	21,025	사방댐	214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김천시 남면 오봉리 130	이재준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 (김천 남 오봉)
2	김천	남	오봉	산204	임야	21,025	사방댐	214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김천시 남면 오봉리 131	이원조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 (김천 남 오봉)
3	김천	남	오봉	산204	임야	21,025	사방댐	214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김천시 남면 오봉리 141	이월봉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 (김천 남 오봉)
4	김천	남	오봉	산204	임야	21,025	사방댐	214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김천시 남면 오봉리 381	손일권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 (김천 남 오봉)
5	김천	남	오봉	산204	임야	21,025	사방댐	214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김천시 남면 오봉리 132	백남진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 (김천 남 오봉)
6	김천	남	오봉	산204	임야	21,025	사방댐	214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김천시 남면 오봉리 134	이경조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 (김천 남 오봉)
7	상주	이안	가장	산9-1	전	614	계류보전	148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86 (상방동)	홍지진	2026년도 계류보전사업 (상주 이안 가장)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적공부			사방사업실행		토지사용내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사업명	면적(㎡)	사용기간	사용자재	주소	성명	
8	상주	외서	우산	64	임야	883	사방댐	259	2026.4.~ 2026.12.	돌, 잔디 등	-	정윤목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 (상주 외서 우산)
9	고령	덕곡	예	산30-2	임야	36,793	계류보전	209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고령군 덕곡면 본리리 181	박친수	2026년도 계류보전설치사업 (고령 덕곡 예)
10	고령	덕곡	예	산30-2	임야	36,793	계류보전	209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고령군 덕곡면 용흥리 257	박장권	2026년도 계류보전설치사업 (고령 덕곡 예)
11	고령	덕곡	예	산37	임야	2,572	계류보전	296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고령군 덕곡면 예리 산38-1	이판곤	2026년도 계류보전설치사업 (고령 덕곡 예)
12	고령	덕곡	예	산38-1	임야	2,497	계류보전	8	2026.4.~ 2026.12.	돌, 잔디 등	고령군 덕곡면 예리 산38-1	이판곤	2026년도 계류보전설치사업 (고령 덕곡 예)
13	성주	용암	대봉	산79-11	임야	45,629	사방댐	16	2026.4.~ 2026.12.	돌, 잔디 등	성주군 용암면 대봉리 748	이중호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 (성주 용암 대봉)

경상북도 공고 제2026-837호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공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영천시 화북면 소재 “영천 봉림사 대웅전”을 다음과 같이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명 :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2.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내용

가. 영천 봉림사 대웅전(永川 鳳林寺 大雄殿)

- 1) 종 별 : 유형문화유산
- 2)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149-368
- 3) 건립년대 : 조선시대
- 4)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림사

5) 수 량 : 1동

6) 지정내역

명칭	재료	구조·형식·형태	규격	수량	기타
영천 봉림사 대웅전 (永川 鳳林寺 大雄殿)					
영천 봉림사 대웅전	목재/ 한식기와	목구조/ 1고주5량가/-자형	정면, 측면 3칸/169㎡	1동	다포/맞배/ 겹처마

7) 토지 지정(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국가유산 구역	국가유산 보호구역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3필지	616,692	169	361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2372	종	1,514	152	199	대한불교 조계종 봉림사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149-368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산105-3	임	1,927	17	137	대한불교 조계종 봉림사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149-368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산105-7	임	613,251	-	25	대한불교 조계종 봉림사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149-368	

8) 지정예고 사유

- 영천 봉림사 대웅전은 정치법이 사용된 평면 구성과 내외 2출목 다포형식 공포에 제공살미를 전면외부는 양서형, 내부는 교두형, 후면은 내외부 모두 교두형으로 달리한 점, 어칸과 헐칸의 주칸이 다름에도 공간포는 2조씩 배치한 점, 단평방, 단퇴량, 이중장여 등 다포계 맞배지붕이 가지는 독특한 부재 등이 원형으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특히 단퇴량의 경우 비교적 고식 건물에서 확인되는 사례로서 조선후기 소규모 사찰 불전의 건축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어 유형문화유산으로 선정 예고하기로 함.

3. 지정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기 타

- 상기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또는 영천시청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 일정거리 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됩니다.
-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54-880-3168 / 팩스 :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54-330-6539 / 팩스 : 054-330-6668
- 주 소 : (우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6-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3류 검단8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1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 검단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1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경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사업

나. 명 칭 :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준용구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 검단8호선) 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 $A = 512\text{m}^2$, $B = 4.0\text{m}$, $L = 100.0\text{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서명(법인명) : (주)우진 대표이사 최정임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339, 2층(동천동)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명또는 명칭	주소	
합 계		6필지		2,575	512			
1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202-1	답	803	91	황병용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35	
2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203	천	151	74	황병철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35	
3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530	구	433	50	국(농림 축산식품부)		
4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132	임	829	269	전영갑	서울 종로구 신교동 70-1 렉스빌 302호	
5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132-1	임	337	23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취득
6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132-2	임	22	5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취득

경산시 고시 제2026-65호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하117호선, 소로2-하119호선, 중로3-하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하117호선, 소로2-하119호선, 중로3-하19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4월 20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로
- 명 칭 : 소로2-하117호선, 소로2-하119호선, 중로3-하19호선

3. 사업규모(변경없음)

- 소로2-하117호선 : L=114.0m, B= 8.0m
- 소로2-하119호선 : L= 50.0m, B= 8.0m
- 중로3-하19호선 : L= 16.0m, B=1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성명 : 경산시장

5. 사업기간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사업기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편입용지조서 】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읍	리					성 명	주 소	
합 계			32필지		5,996	1,610			
1	하양	환상	213-3	전	83	4	국	기획재정부	
2	하양	환상	213-8	전	24	24	국	기획재정부	
3	하양	환상	187-6	대	6	6	공	경산시	
4	하양	환상	213-6	도	22	22	국	기획재정부	
5	하양	환상	187-4	도	48	48	공	경산시	
6	하양	환상	187-5	대	64	64	공	경산시	
7	하양	환상	212-9	도	59	59	공	경산시	
8	하양	환상	212-14	대	78	78	공	경산시	
9	하양	환상	212-15	답	18	18	공	경산시	
10	하양	환상	211-3	도	21	21	공	경산시	
11	하양	환상	211-6	전	111	111	공	경산시	
12	하양	환상	188-5	도	91	91	공	경산시	
13	하양	환상	188-6	전	31	31	공	경산시	
14	하양	환상	189-5	대	4	4	공	경산시	
15	하양	환상	189-6	대	1	1	공	경산시	
16	하양	환상	209-4	도	16	16	공	경산시	
17	하양	환상	209-7	전	60	60	공	경산시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읍	리					성 명	주 소	
18	하양	환상	209-5	도	23	23	공	경산시	
19	하양	환상	209-8	전	56	56	공	경산시	
20	하양	환상	190-2	도	37	37	공	경산시	
21	하양	환상	190-3	전	84	84	공	경산시	
22	하양	환상	209-6	도	9	9	공	경산시	
23	하양	환상	209-11	전	71	75	공	경산시	
24	하양	환상	196-1	도	30	30	공	경산시	
25	하양	환상	196-8	답	54	54	공	경산시	
26	하양	환상	757-30	도	4,197	112	국	국토교통부	
27	하양	환상	199-6	전	57	57	공	경산시	
28	하양	환상	198-4	전	332	106	공	경산시	
29	하양	환상	200-13	대	62	62	공	경산시	
30	하양	환상	200-11	전	173	173	공	경산시	
31	하양	환상	200-12	전	29	29	공	경산시	
32	하양	환상	203-17	대	45	45	김*찬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의성군 고시 제2026-54호

의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가음면 장리 1276번지 일원 의성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의 성 군 수

1.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7-1	가음·장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음면 장리· 가산리 일원	146,500	감) 18,214	128,286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1	가음·장리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 A = 146,500 → 128,286㎡ 감) 18,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티드론 산업클러스터 구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구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1	3,178	19,867	-	-	-	5	1,436	11,488	16	1,742	8,379
	변경	20	3,137	19,611	-	-	-	5	1,436	11,488	15	1,701	8,123
소로	기정	21	3,178	19,867	-	-	-	5	1,436	11,488	16	1,742	8,379
	변경	20	3,137	19,611	-	-	-	5	1,436	11,488	15	1,701	8,123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21개 노선					3,178						
변경	20개 노선					3,137						
소로2류	5개 노선					1,436						
기정	소로	2	1	8~9.5	국지 도로	917	가산리 844-3	장리 1438-2	일반 도로	-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83	가산리 913-2	가산리 872-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72	가산리 1202-4	가산리 120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8	가산리 915-2	가산리 120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36	장리 1361-3	장리 1434-2	일반 도로	-	''	
소로3류	기정	16개 노선				1,742						
소로3류	변경	15개 노선				1,701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7	가산리 871-3	가산리 869-2	일반 도로	-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88	가산리 837-4	가산리 1202-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5	가산리 1204	가산리 120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56	장리 1346-19	장리 1646-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307	장리 1346-10	장리 1355-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208	장리 1353-7	장리 1432-3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263	장리 1287-5	장리 1294-2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263	장리 1287-5	장리 1294-2	일반 도로	-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일부구간 선형변경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41	장리 1277-5	장리 1277-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9	3	특수 도로	39	장리 1622-2	장리 1340-2	보행자 전용도로	-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기정	소로	3	10	3	특수 도로	116	장리 1646-3	장리 1353-1	보행자 전용도로	-	"	녹지용지
기정	소로	3	11	3	특수 도로	54	장리 1349-16	장리 1349-7	보행자 전용도로	-	"	녹지용지
기정	소로	3	12	3	특수 도로	57	장리 1348-5	장리 1668-2	보행자 전용도로	-	"	녹지용지
기정	소로	3	13	3	특수 도로	21	장리 1354-9	장리 1355-11	보행자 전용도로	-	"	녹지용지
기정	소로	3	14	2	특수 도로	228	장리 1646-1	장리 1366-6	보행자 전용도로	-	"	녹지용지
기정	소로	3	15	2	특수 도로	54	장리 1367-1	장리 1426-1	보행자 전용도로	-	"	녹지용지
기정	소로	3	16	3	특수 도로	28	장리 1360-2	장리 1358-1	보행자 전용도로	-	"	녹지용지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7	소로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선형변경 - B=6m, L=26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소로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폐지 - B=6m, L=4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노선 폐지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가음면 장리 1366-4번지 일원	580	-	580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가음면 장리 1353-8번지 일원	12,513	감) 63	12,450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녹지용지

■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원	• 근린공원 면적 축소 - A=12,513㎡ → 12,450㎡, 감) 63㎡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공원 면적 축소

2)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7개소			2,691	-	2,691		
기정	1	공공공지	가음면 장리 1363-12번지 일원	465	-	465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기정	2	공공공지	가음면 장리 1349-12번지 일원	322	-	322	''	
기정	3	공공공지	가음면 장리 1362-8번지 일원	371	-	371	''	
기정	4	공공공지	가음면 장리 1347-4번지 일원	593	-	593	''	
기정	5	공공공지	가음면 장리 1367-1번지 일원	316	-	316	''	
기정	6	공공공지	가음면 장리 1646-1번지 일원	433	-	433	''	
기정	7	공공공지	가음면 장리 1646-1번지 일원	191	-	191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가음면 가산리 884번지 일원	20,080	-	20,080	의성군 고시 제2009-1호 (09.01.12)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계		90,072	-	90,072	
변경	계		72,874	-	72,874	
기정	1	1	18,912	장리 1276번지 일원	18,912	주거용지
변경	1	1	1,714	장리 1276번지 일원	1,714	주거용지
기정	2	2	2,265	장리 1438-1번지 일원	2,265	주거용지
기정	3	3	4,986	장리 1287-1번지 일원	4,986	주거용지
기정	4-1	4-1	1,368	장리 1289-2번지 일원	1,368	주거용지
기정	4-2	4-2	3,686	장리 1363-1번지 일원	3,686	주거용지
기정	4-3	4-3	6,230	장리 1351-2번지 일원	6,230	주거용지
기정	4-4	4-4	450	장리 1287-5번지 일원	450	주거용지
기정	5-1	5-1	3,364	장리 1341-2번지 일원	3,364	주거용지
기정	5-2	5-2	1,869	장리 1340-2번지 일원	1,869	주거용지
기정	5-3	5-3	3,096	가산리 870번지 일원	3,096	주거용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6	6	4,675	가산리 866-2번지 일원	4,675	주거용지
기정	7-1	7-1	4,411	장리 1,355-4번지 일원	4,411	주거용지
기정	7-2	7-2	6,148	장리 1360-2번지 일원	6,148	주거용지
기정	7-3	7-3	3,478	장리 1347-7번지 일원	3,478	주거용지
기정	7-5	7-5	189	장리 1361-4번지 일원	189	주거용지
기정	8-1	8-1	1,537	장리 1429-1번지 일원	1,537	주거용지
기정	8-2	8-2	3,080	장리 1341-1번지 일원	3,080	주거용지
기정	8-3	8-3	6,515	가산리 874-9번지 일원	6,515	주거용지
기정	9	9	1,208	가산리 872-7번지 일원	1,208	주거용지
기정	10	10	4,713	가산리 836-1번지 일원	4,713	주거용지
기정	11-1	11-1	2,229	가산리 918-1번지 일원	2,229	주거용지
기정	11-2	11-2	2,194	가산리 879-1번지 일원	2,194	주거용지
기정	11-3	11-3	532	가산리 914번지 일원	532	주거용지
기정	12	12	2,937	가산리 839-2번지 일원	2,937	주거용지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비고
1	장리 1276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	장리 1438-1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3	장리 1287-1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4-1	장리 1289-2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4-2	장리 1363-1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비고
4-3	장리 1351-2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4-4	장리 1287-5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5-1	장리 1341-2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5-2	장리 1340-2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5-3	가산리 870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비고
6	가산리 866-2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7-1	장리 1355-4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7-2	장리 1360-2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7-3	장리 1347-7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7-5	장리 1361-4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비고
8-1	장리 1429-1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8-2	장리 1341-1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8-3	가산리 874-9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9	가산리 872-7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0	가산리 836-1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비고
11-1	가산리 918-1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1-2	가산리 879-1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1-3	가산리 914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2	가산리 839-2번지 일원	용도	주거용지(허용용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나) 허용용도 분류표

구분	계 획 내 용
A 주거 용지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마. 문화 및 집회시설 바.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미만인 것(농 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함 아. 교육연구시설 자. 노유자시설 차. 수련시설(『건축법 시행령』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카. 운동시설 중 가목(바닥면적 1천㎡ 미만인 것) 타. 창고시설 중 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에 한함 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 및 도축장, 도계장 제외)

다.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안티드론 산업클러스터	연구시설	가음면 장리 1276번지 일원	-	증) 42,034	42,034	-	

■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	안티드론 산업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 신설 - A = 42,03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성군은 드론 산업 거점화 및 드론 실증 비행장, 시험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의 드론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군계획시설(연구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054-830-634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고시 제2026-55호

의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금성면 탐리리 1136번지 일원 의성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의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금성면 탑리4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성면 탑리리 1136번지 일원	-	증) 87,345	87,345	-	

■ 결정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	금성면 탑리4리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87,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성면 탑리4리 일원 낙후지역에 환경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054-830-634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고시 제2026-56호

의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584번지 일원 의성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의 성 군 수

1.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의성농협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성읍 중리리 584번지 일원	12,631	-	12,631	의성군 고시 제2023-144호 (2023.12.26)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①	1	12,631	a	의성읍 중리리 584번지 일원	8,637	-	8,637	• 경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구 및 획지 계획
			b	의성읍 중리리 585번지 일원	3,994	-	3,994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①	1	a	용도	지정 용도 변경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창고) 및 집배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소매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창고) 및 집배송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①	1	a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 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색채 권장	
		b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창고) 및 집배송시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소매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창고) 및 집배송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색 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색채 권장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054-830-634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고시 제2026-84호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5호에 근거, 울진군 고시 제2023-61호(2023.4.20.)로 지정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울진군수

1. 제한지역

- 위 치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화성리 일원
- 면 적 : 1,746,931㎡(896필지)
- ※ 제한지역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게재 생략

2. 제한사유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 위함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최초 고시일로부터 2년 연장하며,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4. 제한대상 행위

구 분	대 상 행 위	비 고
제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한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5.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이해 관계인은 울진군청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산단조성지원팀 (054-789 -5741)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공 고

구미시 공고 제2026-1316호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
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사업 ◦ 명칭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번호	도로명	전체현황	금회개설현황	면적(㎡)	비고	
	1	도시계획도로 (중로2-16호선)	B=15~18.5m L=899m	B=15~18.5m L=426m	7,220.0		
	2	도시계획도로 (중로2-220호선)	B=16.5m L=230m	B=6.5m L=230m	1,481.0		
	3	도시계획도로 (중로3-252호선)	B=12m L=119m	B=4m L=119m	463.0		
	4	도시계획도로 (소로3-440호선)	B=6m L=575m	B=6m L=575m	3,534.0		
	번호	시설명(시설번호)	전체현황	금회개설현황	비고		
	1	주차장(111번)	1,736㎡	1,736㎡			
	2	공원	소공원 (168번)	1,575㎡	1,575㎡		
			어린이공원 (171번)	3,150㎡	3,150㎡		
	3	녹지	경관녹지 (150번)	8,520㎡	8,520㎡		
4	유수지	유수지 (17번)	1,200㎡	1,200㎡	어린이공원 지하중복결정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2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 성명 :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재수, 두산건설(주) 대표 이정환, 이강홍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8.12.31.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 후, 준공 전 양도하여야 함						
7. 사용·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8. 공람기간	◦ 2026.04.20. ~ 2026.05.13. (15일간, 국·공휴일 제외)						
9. 공람장소	◦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구미시 구미대로 246, 광평상가 301호)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구미시 송정대로 55, 별관2 2층)						

※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054-605-5204), 도시계획과(054-480-5405)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중로 2-16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7,220						
1	광평동	221	전	823	823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	광평동	221-3	전	124	124	구미시					
3	광평동	222-1	전	233	233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4	광평동	222-4	답	29	29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5	광평동	222-7	전	108	108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6	광평동	222-8	전	126	126	구미시					
7	광평동	222-9	전	63	63	구미시					
8	광평동	222-10	전	179	72	구미시					
9	광평동	223-2	구	45	45	한국농어 촌공사					
10	광평동	223-4	전	9	9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1	광평동	223-5	전	23	23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2	광평동	228	답	234	234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3	광평동	230	답	321	321	구미시					
14	광평동	232	답	211	211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5	광평동	233-2	답	137	137	구미시					
16	광평동	233-3	전	91	63	구미시					
17	광평동	234	답	131	131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8	광평동	235-1	답	364	349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9	광평동	235-2	답	41	2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0	광평동	235-21	답	279	279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1	광평동	274-6	전	945	515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2	광평동	276	답	756	554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3	광평동	276-1	답	1,165	503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4	광평동	276-2	답	30	30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5	광평동	산50-13	임	847	727	구미시					
26	광평동	산50-14	임	19	12	구미시					
27	광평동	산56-5	임	1,247	872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8	광평동	산56-7	임	501	501	구미중앙 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9	광평동	산76-2	구	443	124	국(농림 수산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중로 2-220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1,481						
1	광평동	233-3	답	91	28	구미시					
2	광평동	235-1	답	364	15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3	광평동	235-2	답	41	39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4	광평동	235-3	답	51	51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5	광평동	235-4	답	23	23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6	광평동	235-5	답	9	9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7	광평동	235-8	답	86	86	구미시					
8	광평동	235-10	답	106	106	구미시					
9	광평동	235-12	답	126	126	구미시					
10	광평동	235-14	답	69	69	구미시					
11	광평동	235-15	답	6	6	구미시					
12	광평동	238	전	81	81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3	광평동	238-2	전	135	135	구미시					
14	광평동	244	답	619	23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5	광평동	244-2	답	175	56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6	광평동	245	답	225	133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7	광평동	245-2	답	124	124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8	광평동	산59-7	임	74	69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9	광평동	산 59-20	임	4,513	7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0	광평동	산72-1	구	24	4	국(농림 수산부)					
21	광평동	산72-2	구	102	102	구미중앙 숲지역주 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2	광평동	산72-4	구	116	116	국(기획 재정부)					
23	광평동	산72-6	구	3,805	73	국(농림 수산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중로 3-252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권리 내용	
합계					463								
1	광평동	240	답	143	44	경상북도 구미시 철성로 99, 1층 (원평동)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플러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길** (수성동*가)	주식회사 ***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길***, **동(검단동)	가압류
										김*호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황금동 ****-*) 금영세라믹스	가압류
										주식회사 **창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효목동)	가압류
										과*용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장동로**,***동****호 (신천동,벽산이슬렌스힐)	가압류
										전력 주식회사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환성정길*	가압류
										***산업 주식회사	주소	(서변동)	가압류
										주식회사 **이엔씨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가압류
										주식회사 ***이엔씨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황금동)	가압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표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현*화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길 **, ***호(테전동)	가압류	
							공(칠곡군)			압류	
							박*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길 **, ***동 ***호 (수성동*가, 수성*가 화성파크드림)	근저당권	
							최*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길 **-*, ***호 (수성동*가, 다세대주택)	근저당권	
							국(서대구 세무서)			압류	
2	광평동	242-1	답	595	83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3	광평동	242-2	답	94	29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4	광평동	243-2	답	233	64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소	
5	광평동	243-4	답	139	83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6	광평동	244-2	답	175	81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7	광평동	260	답	40	37	구미시					
8	광평동	산59-10	임	645	42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로 3-440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소	
합계					3,534						
1	광평동	262-1	전	353	232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	광평동	265-1	답	531	213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3	광평동	266	답	676	235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4	광평동	270-1	구	33	20	한국농어촌 공사					
5	광평동	270-5	답	170	60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6	광평동	270-6	답	245	94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7	광평동	273-1	답	104	62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8	광평동	273-4	구	101	29	한국농어촌 공사					
9	광평동	274-2	구	57	14	한국농어촌 공사					
10	광평동	274-3	전	4	3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1	광평동	274-6	전	945	129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2	광평동	274-8	구	43	42	한국농어촌 공사					
13	광평동	274-9	전	158	1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14	광평동	274-10	전	86	61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5	광평동	산56-4	임	4,689	856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6	광평동	산58-2	임	547	297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7	광평동	산58-3	임	807	27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8	광평동	산59-1	임	1,423	157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9	광평동	산59-10	임	645	2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0	광평동	산59-16	임	2,182	288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1	광평동	산72-5	구	59	43	국(농림 수산부)					
22	광평동	산72-8	구	66	4	국(농림수 산부)					
23	광평동	산72-9	구	816	182	국(농림 수산부)					
24	광평동	산75	구	604	347	국(농림수 산부)					
25	광평동	산76-3	구	220	136	국(농림 수산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주차장, 시설번호 111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소	
합계					1,736						
1	광평동	222-10	전	179	107	구미시					
2	광평동	274-6	전	945	30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3	광평동	276	답	756	202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4	광평동	276-1	답	1,165	662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5	광평동	276-4	답	119	119	구미시					
6	광평동	277-3	체	67	67	구미시					
7	광평동	산56-5	임	1,247	239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8	광평동	산76-2	구	443	310	국(농림수산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공원, 시설번호 168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575							
1	광평동	260	답	40	3	구미시						
2	광평동	산59-1	임	1,423	182	구미중앙숲지 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3	광평동	산59-4	임	869	4	구미중앙숲지 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4	광평동	산59-10	임	645	569	구미중앙숲지 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5	광평동	산59-11	임	109	22	구미중앙숲지 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김*오	구미시 형곡동 ***-*, 형곡*자두산맨션***					
6	광평동	산59-16	임	2,182	795	구미중앙숲지 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어린이공원, 시설번호 171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3,150					
1	광평동	240	담	143	99	구미중앙숲 지역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 (원평동)			
						주식회사 **플러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길 ** (수성동**가)	주식회사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길 **-* , **동(검단동)	가압류
								김*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황금동 ****-*) 금영세라믹스	가압류
								주식회사 **창호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 (효목동)	가압류
								곽*용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 ***동 ****호 (신천동, 벽산이슬렌스힐)	가압류
								전력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북구 환성정길 *-(서변동)	가압류
								***산업 주식회사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	가압류
								주식회사 **이엔씨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 (황금동)	가압류
								현*화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길 **, ***호(테전동)	가압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공(칠곡군)			압류		
								박*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길 **, **동 ***호(수성동**가, 수성*가 화성파크드림)			근저당권	
								최*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길 ***-*, ***호(수성동**가, 다세대주택)			근저당권	
								국(서대구 세무서)				압류	
2	광평동	242-1	답	595	512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3	광평동	242-2	답	94	65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4	광평동	243-1	답	662	622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5	광평동	243-2	답	233	169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6	광평동	243-4	답	139	56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7	광평동	244	답	619	596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8	광평동	244-2	답	175	38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9	광평동	245	답	225	92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0	광평동	산59-1	임	1,423	869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1	광평동	산59-10	임	645	32	구미중앙숲지 여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경관녹지, 시설번호 150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합계					8,520					
1	광평동	262-1	진	353	121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	광평동	265-1	답	531	318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3	광평동	266	답	676	441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4	광평동	270-1	구	33	13	한국농어촌공사				
5	광평동	270-5	답	170	110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6	광평동	270-6	답	245	151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7	광평동	273-1	답	104	42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8	광평동	273-4	구	101	72	한국농어촌공사				
9	광평동	273-6	답	56	56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0	광평동	274-1	진	49	49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1	광평동	274-2	구	57	43	한국농어촌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2	광평동	274-3	전	4	1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3	광평동	274-4	전	28	28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4	광평동	274-6	전	945	271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5	광평동	274-8	구	43	1	한국농어촌공사					
16	광평동	274-10	전	86	25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17	광평동	산50-13	임	847	120	구미시					
18	광평동	산50-14	임	19	7	구미시					
19	광평동	산56-4	임	4,689	3,833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0	광평동	산56-5	임	1,247	136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1	광평동	산58-2	임	547	182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2	광평동	산59-4	임	869	865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3	광평동	산59-11	임	109	87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김*오	구미시 형곡동 ***-*, 형곡*차두산맨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24	광평동	산59-16	임	2,182	544	구미중앙숲지역 주택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99, 1층(원평동)				
25	광평동	산72	구	1,084	24	국(농림수산부)					
26	광평동	산72-5	구	59	16	국(농림수산부)					
27	광평동	산72-9	구	816	390	국(농림수산부)					
28	광평동	산75	구	604	257	국(농림수산부)					
29	광평동	산75-1	구	662	224	국(농림수산부)					
30	광평동	산76-2	구	443	9	국(농림수산부)					
31	광평동	산76-3	구	220	84	국(농림수산부)					

칠곡군 공고 제2026-539호

칠곡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700번지 일원의 칠곡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칠 곡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7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칠곡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영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사면보강 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456,941.9㎡

나. 금회사업면적 : 617㎡(식생옹벽블럭 H=2.0m, L=235.6m)

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계	내륙컨테이너기지	복합화물터미널	공공및지원시설
면 적(㎡)	456,941.9	123,723	111,215	222,003.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 1) 명 칭 : (주)영남복합물류공사
- 2) 소재지 :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

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박정규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52, 102동 802호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일 : 2026년 1월 29일

나. 준공일 : 2026년 3월 26일



기 타

공 고

의성소방서 공고 제2026-1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 및 현장 교부송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의 성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26. 4. 17. ~ 2026. 5. 1.
2. 납부대상 : 의료법인세림의료재단
3.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흥술로 ○○
4. 위반내용 :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완료 보고서 미제출
5.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6. 산출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0] 2.개별기준 자목 3)

7. 과 태 료 : 금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납부액

8. 납부기한 : 2026. 5. 29.(금)

1)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www.wetax.go.kr)

2) 전자납부번호 : 4700022651101161594

9. 참고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내(2026. 5. 29.)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80/100인 금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 감경(1/2)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시,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054-830-7734)



기 타

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26. 4. 14.(화) 간부회의(공공기관 유치 및 행정통합 대응 전략회의) 시 -

구분	지시내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유치 활동 적극 전개 - 실국 소관별 유치기관 방문, 당위성 및 지역 상황 설명 등 	지방시대정책과 (전 부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 현황 점검 및 개선책 마련 - 적정 운영 여부, 제도적 개선책 등 검토 	행정지원과
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확보 관련 소관별 중앙부처 대응 총력 	전 부서